

# 本會 개정 정관

1989년 4월 29일 개정

종 전 규 정	개 정 규 정	개 정 사 유
<p>제 5 조(사업) ① 본협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 및 건축사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</li> <li>2. 건축시공 기술에 관한 지도·감정</li> <li>3. 회원의 업무 윤리에 관한 사항.</li> <li>4. 회원의 건축에 관한 교육, 작품발표 및 자재전시</li> <li>5. 건축에 관한 국제기구에의 참여와 국제교류</li> <li>6.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사항</li> <li>7. 본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</li> <li>8. 건축에 관한 각종 현상설계공모 및 심사대행에 관한사항</li> <li>9. 기타 제 3 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 <p>② 본협회는 건축사 연금제도를 두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다른 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본협회는 건축 및 건축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.</p> <p>④ 본협회는 건축사업무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.</p> <p>⑤ 신설</p>	<p>제 5 조(사업) ① (종전과 같음)</p> <p>②-④ (종전과 같음)</p> <p>⑤ <u>본협회는 건축관계 법령 및 건축행정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건축법령 연구소를 설치하여운영 관리한다.</u></p>	<p>본협회내에 “건축법령 연구소”의 설치근거를정함.</p>
<p>제 7 조(회원) ① 본협회의 정회원을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.</p> <p>② 본협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이외에 다음 각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추대회원 : 본협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15년이상 보유한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<u>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자</u></li> <li>2. 명예회원 : 저명한 건축가 및 본협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로서 <u>이사회에서 추대 받은자.</u></li> <li>3. 찬조회원 : 본협회의 사업목적을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<u>이사회에서 추대 받은 자.</u></li> <li>4. 준회원 :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로서 <u>준회원으로 입회를 한자</u></li> </ol>	<p>제 7 조(회원) ① (종전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1. 추대회원 : ..... ..... ..... <u>이사회에서 추대받아 총회에 보고된 자</u> 2 ~ 4 (종전과 같음)</p>	<p>추대회원의 총회 추대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추대할수 있도록함.</p>
<p>제 14 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본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④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본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</p>	<p>제 14 조(임원의 직무) ①-② (종전과 같음)</p> <p>③ <u>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본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업무를 추진한다.</u></p> <p>④ (종전과 같음)</p>	

종 전 규 정	개 정 규 정	개 정 사 유
<p>제16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임원중 이사3명, 감사1명의 임기는 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.</p> <p>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임원의 후임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을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27조(사무처) ① 본협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</p> <p>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장 밑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획관리실</li> <li>2. 총 무 부</li> <li>3. 기 술 부</li> <li>4. 출판사업부</li> </ol> <p>③ 사무처 직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제33조(지부임원) ①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 부 장 : 1인</li> <li>2. 부지부장 : 1인</li> <li>3. 간 사 : 소속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정하며 100인 미만의 지부는 3인으로 하고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더 선출하되 총12인을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4. 감 사 : 2인</li> <li>5. 분소장 : 분소당 1인</li> </ol> <p>제34조(지부임원의 직무)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무를 통리하고 지부총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, 지부장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간사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간사로서 조직하며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p>④ - ⑤ (내용 생략)</p> <p>제35조(지부임원 및 대의원선출) ① (내용생략)</p> <p>② (내용생략)</p> <p>③ 분소장은 간사회의 협의를 거쳐 지부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36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) ① 지부장, 부지부장 및 간사, 지부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분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제16조(임원의 임기) ①..... ..... 각각 2년으로 하며,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</p> <p>② - ④ (현행과 같음).</p> <p>제27조(사무처) ① (종전과 같음)</p> <p>②..... 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 무 부</li> <li>2. 기 술 부</li> <li>3. 출판사업부</li> </ol> <p>③ (종전과 같음)</p> <p>제33조(지부임원) ①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부회장 : 1인</li> <li>2. 지부 부회장 : 1인</li> <li>3. 간 사 : 소속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서울특별시지부 및 직할시 지부의 경우 100인 미만의 지부는 5인으로, 기타 지부의 경우 50인 미만의 지부는 3인으로 정하되 각 지부는 150인을 초과할때 마다 1인을 더 선출할 수 있으나 총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4. (종전과 같음)</li> <li>5. 분소회장 · 분소당 1인</li> </ol> <p>제34조(지부임원의 직무) ① 지부회장은..... .....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지부부회장은 지부회장을 보좌하며 지부회장 유고시..... 대행한다.</p> <p>③ 간사회는 지부회장과 지부부회장 및..... 의결한다.</p> <p>④ - ⑤ (종전과 같음)</p> <p>제35조(지부임원 및 대의원 선출)</p> <p>① - ② (종전과 같음)</p> <p>③ 분소회장은 간사회의 협의를 거쳐 지부회장이 위촉.....한다.</p> <p>제36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) ① 지부회장, 지부부회장, 간사, 감사 및 분소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 임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경우 지부 회장과 지부부회장의 직무수행기간은 동일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기획관리실 업무를 축소하여 총무부에 기획과를 둠.</p> <p>지부의 명칭은 “지부” 그대로 하고 지부장 → 지부 회장으로, 부지부장 → 지부부회장으로 함. 지부소속 간사의 수를 정회원수를 기준으로 적의 조정함.</p> <p>지 부 장 → 지부회장 부지부장 → 지부부회장</p> <p>지부장 → 지부회장 분소장 → 분소회장 지부장 → 지부회장 부지부장 → 지부부회장</p> <p>지부임원의 직무수행을 명문화 하며, 지부회장과 지부 부회장의 직무수행기간을 동일기로 명시 함.</p>

종 전 규 정	개 정 규 정	개 정 사 유
<p>③ 지부임원의 보선과 그 임기는 제15조 제3항 및 제4항, 제16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41조(지부총회의 소집공고 및 성원) ① 지부총회는 <u>지부장</u>이 소집하며 ..... 공고한다. ② (내용생략)</p> <p>제4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약간명을 두되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<u>지부장</u>이 위촉한다. ② — ④ (내용생략)</p> <p>제49조(사업보고) ① 지부는 매월 10일까지 회무에 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보고한다. 1. 전월의 일반회무 보고서 2. 전월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3. 그달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계획서 ② 월례보고외에 특수사항 또는 돌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.</p> <p>제53조(결산서 제출) <u>지부장</u>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하며 2월말까지 지부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④ (종전 제③항과 같음)</p> <p>제41조(지부총회의 소집공고 및 성원) ① 지부 총회는 <u>지부회장</u>이..... 공고한다. ② (종전과 같음)</p> <p>제4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약간명을 두되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<u>지부회장</u>이 위촉한다. ② — ④ (종전과 같음)</p> <p>제49조(사업보고) ① 지부는..... ..... 보고한다. 1. .... 2. .... 3. (삭제) ② (종전과 같음)</p> <p>제53조(결산서 제출) <u>지부회장</u>은..... .....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지부장 → 지부회장</p> <p>지부장 → 지부회장</p> <p>지부업무량 경감 및 지부독립예산체제의 전환에 의하여 삭제 함.</p> <p>지부장 → 지부회장</p>
부 칙		
<p>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9년4월29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) <u>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는 당해년도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③ (지부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<u>지부임원임기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임원의 임기만료는 당해년도의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지부회장과 지부부회장의 직무수행기간은 동일기간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 <u>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규정에 있어서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당해 정관을 시행한 날로부터 제규정이 개정될때 까지 지부회장 및 지부부회장으로 한다.</u></p>		

#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내용

1989년 3월 29일 개정

종전 연금 규정	개정 연금 규정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5조에 그 근거를 두며 회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수혜금을 지급하고 해당회원에 대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에 목적을 둔다.(개정 87. 1. 21)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금이라 함은 전 회원이 적립하는 <u>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복지연금을 말한다.</u></p> <p>2. 퇴직연금이라 함은 사망 또는 폐업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.</p> <p>3. 복지연금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회원 또는 20년이상 협회 가입회원으로 신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폐업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.(개정 87. 3. 27)</p> <p>4. 사망 위로금이라 함은 회원의 사망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말한다.(신설 87. 3. 27)</p> <p>5. 연금회비라 함은 소정의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회원의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(개정 87. 3. 27)</p> <p>6. 연금의 배당(이하 "배당"이라한다)이라 함은 조성된 기금을 각 회원별로 등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증서로써 회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87. 3. 27)</p> <p>제3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 종전과 같음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종전과 같음</p> <p>1. ....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, 복지연금과 사망위로금을 말한다.</p> <p>2. ....영구폐업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.</p> <p>3. ....회원으로로서 자진 영구폐업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.</p> <p>4. 종전과 같음</p> <p>5. 종전과 같음</p> <p>6. 삭 제</p> <p>제3조 삭 제</p>	<p>• 사망위로금 상입</p> <p>• 20년 이상 협회가입 회원 제외</p> <p>• 연금 배당 규정 삭제</p> <p>• 제14조에서 개정 규정함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</b></p> <p>제4조(기금의 조성) 협회는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.</p> <p>1. 회원이 납부하는 연금회비</p> <p>2.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</p> <p>3. 기타 수입금</p> <p>제5조(기금조성기간) 기금조성은 협회가 존속하는 한 연속적으로 하되 연금회비의 관리는 총회에서 조성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연금회비) 연금회비는 전조에 따른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회원의 설계 보수액 및 감리비와 감정수수료의 각 1%로 하며 설계도서 신고나 감리비 및 감정료 수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87. 3. 27)</p> <p>제7조(기금의 관리) 1. 연금회비나 기타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일중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</p> <p>2. 각 지부에서 수납된 수입금은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</b></p>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종전과 같음.</p> <p>제4조(기금조성기간) .....연속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연금회비) ① 연금 회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기본연금회비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 <p>1. 회원의 설계보수액의 1%</p> <p>2. 회원의 감리보수액의 1%</p> <p>3. 회원의 감정수수료의 1%</p> <p>② 제1항의 기본연금회비는 설계보수액의 1%, 감리보수액의 1% 및 감정수수료의 1%를 더하여 이를 납부한 회원수로 나눈 값의 2분의 1로한다.</p> <p>제6조(기금의 관리) ① 종전과 같음.</p> <p>② 종전과 같음.</p>	<p>• 연금회비관리 는 기금의 관리조항에 명 사람</p> <p>• 기본연금 회비 당시</p>

종전 연금 규정	개정 연금 규정	비고
<p>일 10일까지 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송금하여야 한다. 다만 수시송금을 원하는 지부는 따로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(개정 87.1.21)</p> <p>3.기금의 예치방법과 예치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</p> <p>4.예치된 기금은 연금 지급 이외의 타용도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.(개정 87.3.27)</p> <p>5.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상의 기금은 신탁예금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기로 하고, 입·출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공동관리하게 한다.(개정 87.1.21)</p> <p>6.협회 정관에 의한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총회가 결의하는데 따른 책임을 진다.</p> <p>제8조(회계) 1.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.</p> <p>2.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그 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3.기금관리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매회계년도별로 예산과 결산을 따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4.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회계규정에 따른다.</p> <p>5.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협회 감사는 물론 별도로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의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.</p>	<p>③ 기금의 관리방법은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④ 현행과 같음.</p> <p>⑤ .....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식하고 입출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공동 관리하게 한다.</p> <p>⑥ 종전과 같음.</p> <p>제7조(회계) ① 종전과 같음.</p> <p>② 종전과 같음.</p> <p>③ .....연금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종전과 같음.</p> <p>⑤ 종전과 같음.</p>	<p>• 이사회-연금운영위원회로 변경</p> <p>• 관리위원수 조정</p> <p>• 연금운영위원회에서도 예산·결산승인발부도록 규정</p>
<p>제3장 연금의 배당 및 지급</p>	<p>제3장 연금의 지급</p>	
<p>제9조(연금의 배당) 1.구성된 기금은 매회계년도별로 결산을 하여 회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.</p> <p>2.배당할 때에는 연금배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배당기준) 1.배당이 완료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식은 기금 배당 금액 비율로 당해년도에 배당을 받은 회원에게만 배당한다.</p> <p>2.기타 배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가. 당해 기간중 무실적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.</p> <p>나. 당해 회계기간중 휴업을 하거나 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일수는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한다.(개정 87.3.27)</p> <p>다. 신입회원은 연금회비로 납부한 다음달로부터 배당한다.</p> <p>다. 배당받을 회원의 유고시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</p> <p>제11조(퇴직연금의 지급)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/p> <p>1. 연금의 지급액은 이미 배당된 증서의 표기금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년도분의 중도 배당액과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 <p>2. 지급 사유가 발생한 배당액을 당해년도 경과일수로 등분하여 계산한다.</p> <p>3. 당해년도 경과일수는 당해년도의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.</p> <p>제12조(복지연금의 지급) 복지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/p> <p>1. 연금의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되, 지급초년도는 월 60만원의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가입년도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87.3.27)</p>	<p>제8조(실적증서 교부) 매회계년도 연금 결산이 승인되면 당해년도 결산요약서가 명시된 실적증서를 해당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실적산정기준) ① 당해년도에 회원 기본 연금회비 이상을 납부하면 실적년수로 산정한다.</p> <p>② 회원 기본연금회비 금액에 미달하는 회원도 익년 2월말까지 기본연금회비의 부족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실적년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당해년도 납부금액을 반환하고 실적년수로 계산하지 않는다.</p> <p>③ 협회 창립일로부터 1986년까지의 실적년수는 회원가입년수의 1/2로 환산한다.</p> <p>④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연금회비 납부년수만을 계산한다.</p> <p>⑤ 1990년부터는 회원 기본연금회비 금액 이상 납부한 자만을 실적년수로 계산한다. 단, 무실적자라 하여도 회원 기본연금회비를 납부하면 실적회원으로 간주한다.</p> <p>⑥ 실적년수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10조(퇴직연금의 지급).....</p> <p>1. 연금의 지급액은 실적년수×과거 최대기본 연금회비금액×2배로 한다.</p> <p>2.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년도 실적산정은 당해 기일을 기준으로 연금회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전년도 기본 연금회비 이상 납부자는 실적년수로 환산하고, 미만 납부자는 실적년수의 1/2로 계산하여 제1호에 합산하여 계산한다.</p> <p>제11조(복지연금의 지급).....</p> <p>1. 연금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가. 복지연금지급액=퇴직연금×3/100</p> <p>다만, 1990년까지의 복지연금지급 계산은 1990=3/100</p>	<p>• 배당의 용어 변경(결산요약서 명시, 실적증서 교부)</p> <p>• 배당기준을 실적 산정기준으로 변경</p>

종전 연금 규정	개정 연금 규정	비고
<p>(복지연금지급액=기준액×가입년수/20)</p> <p>2. 복지연금은 퇴직연금 일시 지급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3. 복지연금 수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복지연금액은 배당증서 액면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. (신설 87. 3. 27)</p> <p>4. 복지연금 수혜자는 배당증서를 협회 보관시켜야 한다. (신설 87. 3. 27)</p> <p>제13조(사망위로금의 지급) 사망위로금은 배당금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복지연금 수혜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(신설 87. 3. 27)</p> <p>제14조(연금운영위원회 설치) 1. 이 규정에 의한 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금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칭한다)를 설치한다. (신설 87. 3. 27)</p> <p>2.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(신설 87. 3. 27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다음날로 부터 시행한다.</p> <p>1. 연금회비 납부 : 1987년 1월 1일</p> <p>2. 퇴직연금 지급 : 1988년 1월 1일</p> <p>3. 복지연금 지급 : 1990년 1월 1일</p> <p>4. 사망위로금지급 : 1990년 1월 1일 (신설 87. 3. 27)</p>	<p>1991년 - 2.8/100</p> <p>1992년 - 2.6/100</p> <p>1993년 - 2.4/100</p> <p>1994년 - 2.2/100</p> <p>1995년 이후부터는 2/100로 한다.</p> <p>나. 복지연금 지급액의 물가상승률은 연금운영위원회에서 매년 3월중에 정한다.</p> <p>2. 삭제</p> <p>2. 복지연금 수혜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영구폐업시 선택하며 도중에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.</p> <p>3. 복지연금 수혜자는 실적증서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.</p> <p>4. 복지연금은 수혜자가 사망시까지 지급하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없다.</p> <p>다만, 사망당월은 복지연금을 지급한다.</p> <p>제12조(사망위로금의 지급) 사망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/p> <p>1. 만 65세미만 회원이 사망할 시에는 법정상속인에게 퇴직연금액의 50/100을 지급한다.</p> <p>2. 만 65세이상 회원이 사망할 시는 법정상속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/p> <p>만65세 퇴직연금×50/100</p> <p>만66세 " ×45/100</p> <p>만67세 " ×40/100</p> <p>만68세 " ×35/100</p> <p>만69세 " ×30/100</p> <p>만70세 " ×25/100</p> <p>만71세 " ×20/100</p> <p>만72세 " ×15/100</p> <p>만73세 " ×10/100</p> <p>만74세 " × 5/100</p> <p>만75세 이상은 과거 최대 기본 연금회비 금액의 2배.</p> <p>3. 복지연금 수혜자가 사망할 시는 사망위로금으로 당사자 월 복지연금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.</p> <p>제13조(연금 운영위원회 설치) ① 종전과 같음.</p> <p>② 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본부 임원과 시·도 지부 회장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연금운영위원회는 5인이내로 구성된 연금연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④ 종전 제2항과 같음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</p>	<p>• 배당증서를 실적증서로</p> <p>• 수혜기간을 사망시까지로 제한 (신설)</p> <p>• 사망위로금의 연량별 금액 명시</p> <p>• 위원의 명시 (신설)</p> <p>•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 (신설)</p> <p>• 시행규칙명시 (신설)</p>

종전 연금 규정	개정 연금 규정	비고
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	..... .....	
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	..... 월 일 ..... 부 칙	
	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 조제2항의 기본연금회비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(퇴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발생한 퇴직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	(신설)

### 연 금 액 산 출 방 법

(1990. 1. 1적용시)

구 분	산 출 방 법
퇴 직 연 금 (65세미만 회원 폐업시)	1) 가정 → 연령 만60세, 개업년수: 24년, 실적년수: $21/2 ('65년 - '86년) + 3년 ('87 - '89) = 13.5년$ 과거 최대 기본연금회비: 750,000원 2) 연금액 (일시금) → $750,000원 \times 13.5년 \times 2배 = 20,250,000원$
복 지 연 금 (65세이상 회원 폐업시)	1) 가정 → 연령 만70세, 개업년수: 24년, 실적년수: $21/2 ('65년 - '86년) + 3년 ('87 - '89) = 13.5년$ 과거 최대 기본연금회비: 750,000원 2) 연금액 (월) → $750,000 \times 13.5년 \times 2배 \times 3/100 = 607,500원$
사 망 위 로 금 I · II = 퇴직연금 별도	I. 65세미만 1) 가정 → 연령 만60세, 개업년수 24년, 실적년수 = $21/2 ( '65 - '86) + 3년 ('87 - '89) = 13.5년$ 과거 최대 기본연금회비: 750,000원 2) 위로금 → $750,000원 \times 13.5년 \times 2 \times 50 / 100 = 10,125,000원$
	II. 65세이상 1) 가정 → 연령 만70세, 개업년수 24년, 실적년수: 상동 과거 최대 기본연금회비: 750,000원 2) 위로금 → $750,000원 \times 13.5년 \times 2 \times 25 / 100 = 5,062,500원$
	III. 복지연금 수혜자 위로금 → 월복지연금액 × 2배

#### 법률 제4,116호

### 건축사법중개정법률

1989. 4. 1

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

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 
제16조 제2항을 소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●건축사법 개정이유

건축직 공무원 경력자에게 특별전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온 특례제도를 폐지하되, 앞으로는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일부과목 면제의 혜택만을 주려는 것임.

#### ●주요골자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7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허용하여 온 현행의 특별전형 시험에 의한 건축사면허취득제도를 폐지함.
2.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7년이상의 경력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건축사 면허의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.